#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87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고동진·김성원·박덕흠

박성민 · 김위상 · 엄태영

주호영 • 한지아 • 서범수

박충권 • 박성훈 의원

(119]

### 제안이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Meister School)의 설립 취지대로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선 산학겸임교사의 원활한 배치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산학겸임교사의 정원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학교들이 이들 기준을임의적으로 정한 후 운영하고 있어 학교들간 운영의 편차가 큰 동시에 안정적인 수급의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사업자가 산학겸임교사를 학교에 파견할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소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의 교부 외에는 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시책 이 부족하여 양질의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겸임교사 운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 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제23조의3 신설).
-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 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신설).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산학겸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제3항신설).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6 1조의2제1항 신설).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야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자격기준 및임용"을 "자격·임용·정원·배치·수당지급 등 기준"으로 한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3(직업교육의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직업교육 활성화 실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실행계획의 결과와 교육 효과를 평가하여 관련 개선 대책을 다음 차수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 및 실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1조의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생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
	통령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
	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
	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
	<u>을 지원할 수 있다.</u>
<u> &lt;신 설&gt;</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
	<u>활한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산</u>
	학겸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
	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
	런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u>4</u>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 <u>자격</u>	<u>자격</u>
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	·임용·정원·배치·수당지급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등 기준</u>
<u>&lt;신 설&gt;</u>	제23조의3(직업교육의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에 따라 학교의 체계적
	이고 일관된 직업교육을 보장

해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 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직업교육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실행 계획의 결과와 교육 효과를 평 가하여 관련 개선 대책을 다음 차수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 및 실행 계획 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지반자치단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

<신 설>

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 에 따라 필요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